

#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42호
의결년월일	2009. 7. 10. (제153회)

제의년월일 : 2009. 7. 7.

제 의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일부 개정(대통령령 제20900호, 2008. 7. 3. 공포·시행)에 따라 국 단위 조직을 7국에서 5국으로 축소하는 한편,
- 뉴타운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청소·상하수도 등 현장 중심의 행정기구를 사업소 단위로 기구 신설하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에 의안·의결됨으로써 이와 관련한 부천시의회 위원회의 소관을 변경되는 직제에 맞춰 개정코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(제3조)중 상임위원회 소관 변경
- 기획재정위원회,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변경
-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중 환경수도국·도시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통·폐합 하고 뉴타운개발국을 폐지
-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업소중 맑은물청소사업소·뉴타운개발사업단 신설

##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“주민생활지원국”을 각각 “복지문화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“환경수도국·도시국·뉴타운개발국”을 “도시환경국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공원관리사업소”를 “맑은물청소사업소·뉴타운개발사업단·공원관리사업소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1. (생략) 가.~다. (생략)</p> <p>2. (생략) 가.~나. (생략) 다. <u>주민생활지원국</u> 중에서 문화산업과·문화예술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라. (생략)</p> <p>3. (생략) 가. (생략) 나. <u>주민생활지원국</u>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·사회복지과·가정복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다. (생략)</p> <p>4. (생략) 가. <u>환경수도국·도시국·뉴타운개발국·건설교통국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>나. 사업소 중에서 <u>공원관리사업소·교통정보센터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가.~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 가.~나. (현행과 같음) 다. <u>복지문화국</u>----- -----</p> <p>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<u>복지문화국</u>----- -----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 가. <u>도시환경국</u>----- -----</p> <p>나. ----- <u>맑은물청소사업소·뉴타운개발사업단·공원관리사업소</u> -----</p>